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자원
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46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2. 제안이유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천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1. 21.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리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됨.

나.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2조제2호의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이 중 금천구체육회 등에 소속되어 배치된 사람을 의미함.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구분	채용인원	근무시간
금천구 체육회	10명 (일반지도자 5명, 어르신지도자 5명)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금천구 장애인체육회	6명(장애인지도자 6명)	

1. 주요 업무

- 금천구 체육회 : 현장지도활동(학교, 복지관 등), 종목별 대회,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사업 진행
- 금천구 장애인체육회 : 현장지도활동(장애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2. 임금 체계

- 임금체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급여 책정, 자치단체(지방체육회)의 예산 범위내 급여 및 수당 추가 보조 가능 ▶ 급여 + α(처우개선비 등) * 경력인정 없음
- 2024년도 인건비 세부내역
 - 급여 ▶ 매년 문화체육부 장관 책정, 국비, 시·구비 각 50% 부담

구분	기본급	수당
금천구 체육회	월 2,607,750원 지급 (연차 관계없이 동일)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금천구 장애인체육회	월 2,595,000원 지급 (연차 관계없이 동일)	급식비, 명절수당 등

2)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 구청장 책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함

3)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2022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기본급 50%와 자체 책정한 부가적 수당을 시비 및 구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체계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기본급이 동일한 실정임.
-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활동 전문지도자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임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단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임금 체계 정비, 예산 확보 방안 등 생활체육지도자 사기진작 및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3호, 2023. 8. 8.,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 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